

봉 화 읍 도 촌 리 폐 기 물
최 종 처 분 시 설 (매 립) 조 성 사 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2025. 03

(주) 제 이 픽 컴 퍼 니

제 1 장

사업의 개요

-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1.3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1.4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 1.5 사업의 내용
 - 1.6 사업의 기대효과
-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부지에 봉화군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한 폐기물매립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계획·수립하고자 함
-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 사업장은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위생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진기술을 접목한 관리형 매립시설(에어돔)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 봉화군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활하고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 환경오염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각종 오염에서 국토를 보호함은 물론, 인근 지역의 유희노동력을 고용하여 노동력의 활용 효과 및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에 계획중인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3]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 표 1.2-1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2. 산지의 개발 사업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15. 폐기물 처리 시설 분뇨처리 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가) $\frac{\text{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30\text{만제곱미터}} + \frac{\text{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5\text{만제곱미터}}$ 나) $\frac{\text{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용적}}{330\text{만세제곱미터}} + \frac{\text{지정폐기물 매립용적}}{25\text{만세제곱미터}}$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 계 속 >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사업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 또는 채굴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3]

< 표 1.2-2 >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결과

· 산지전용 면적 : 156,338m ²
· 폐기물 매립용적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매립용적 : 1,560,000m ³ - 지정폐기물 매립용적 : 1,040,000m ³
· 토석채취 면적 : 156,338m ²
·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 $156,338\text{m}^2/200,000\text{m}^2 + 1,560,000\text{m}^3/3,300,000\text{m}^3 + 1,040,000\text{m}^3/250,000\text{m}^3 + 156,338\text{m}^2/100,000\text{m}^2 = 7.0$ (평가대상)

1.3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에 계획중인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 조성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표 1.3-1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 표 1.3-2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구 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바.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5호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2]

1.4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1.4.1 추진경위

- 2020.10.08 : 도촌1리 주민 1차 사업설명 및 매립시설 견학
- 2022.11.05 : 도촌1리 주민 2차 사업설명 및 매립시설 견학
- 2022.11.27 : 도촌1리 주민 3차 사업설명 및 매립시설 견학
- 2022.12.03 : 도촌1리 주민 4차 사업설명 및 매립시설 견학
- 2022.12.15 : 도촌1리 주민설명회 개최
- 2023.02.18 : 도촌1리 주민 5차 사업설명 및 매립시설 견학
- 2023.03.25 : 도촌1리 주민 6차 사업설명 및 매립시설 견학
- 2023.04.01.~2023.04.30 : 도촌1리 주민동의서 관련 협의
- 2023.05.02 : 도촌1리 주민동의서 완료
- 2023.05.02 : 도촌1리 주민협의체와 협약체결(사업 적극 유치)
- 2024.11.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24.12.03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완료
- 2024.12~2025. 01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 수렴(서면심의)
- 2025.01.15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수렴

1.4.2 추진계획(안)

- 2025. 03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예정
- 2025. 04~06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공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 2025. 10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 예정

1.5 사업의 내용

1.5.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봉화읍 도촌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73-14번지 일원
- 규 모 : 총 면적 248,947㎡, 총 매립용량 2,600,000㎥
 - 1단계 : 면적 41,524㎡, 용량 1,300,000㎥
 - 2단계 : 면적 41,787㎡, 용량 1,300,000㎥
- 사업기간 : 16년(1, 2단계 매립시설 각 8년)
- 사업비 : 약 700억원(토지매입비 별도)
- 사업시행자 : (주)제이픽컴퍼니
-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

1.5.2 사업의 규모

- 토지이용계획

구 분	사업면적(㎡)	구성비(%)	비 고
매립시설 부지	111,570	44.8	
사면녹지	50,052	20.2	
도 로	22,765	9.1	
부대시설	64,560	25.9	
총 계	248,947	100.0	

- 매립계획

- ① 매립형식 : 지붕형 준호기성 관리형 위생매립(Cell 방식)
- ② 매립대상폐기물 :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 ③ 매립고 : 55.0m(지하:40.0m, 지상:15.0m) - 1,2단계 매립시설 동일
- ④ 매립면적

구 분	1단계	2단계	합 계	비 고
매립면적	41,524㎡	41,787㎡	83,311㎡	

- ⑤ 매립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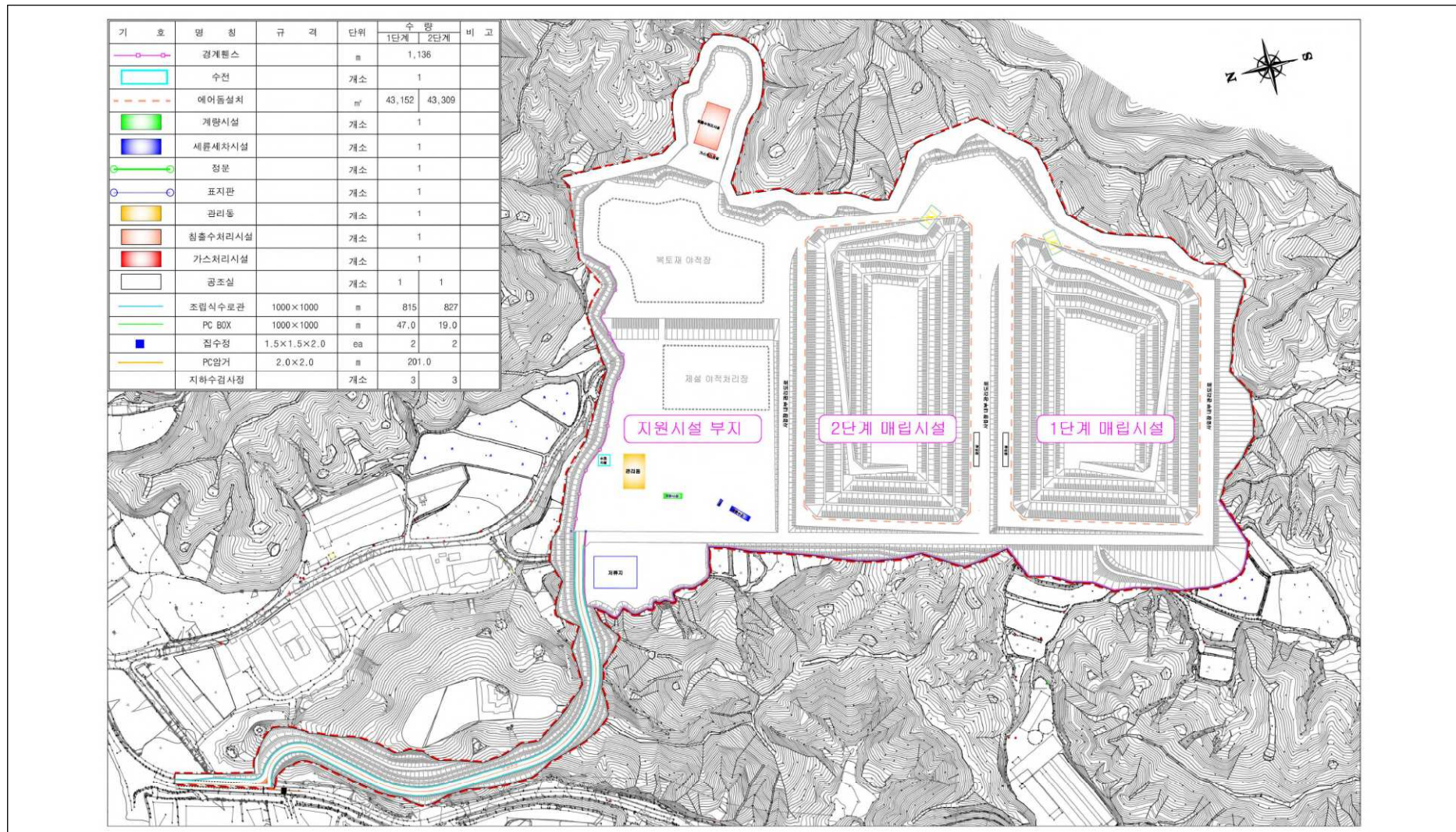
구 분	1단계	2단계	합 계	비 고
일반폐기물	780,000㎥	780,000㎥	1,560,000㎥	지정, 일반 혼합매립
지정폐기물	520,000㎥	520,000㎥	1,040,000㎥	
합 계	1,300,000㎥	1,300,000㎥	2,600,000㎥	

1.5.3 주요시설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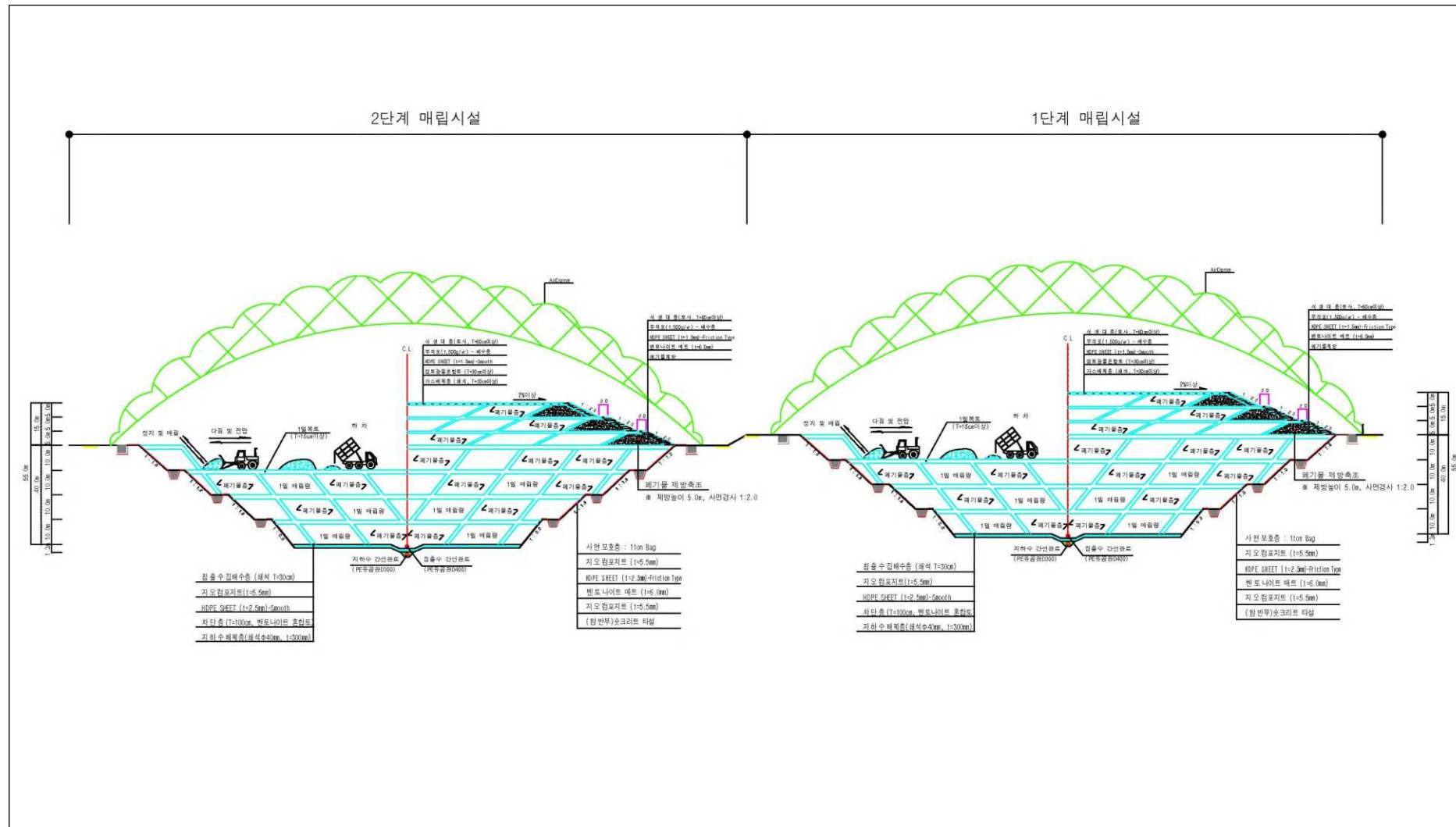
구분	명 칭	제원 및 규격				비고
		1단계		2단계		
도로 시설	사업장 진입도로	B = 9.0m, L = 527.0m, A = 4,005.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매립시설 내부 진입도로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연장(m)	375.0	370.0	745	
		폭원(m)	7.0	7.0	7.0	
		면적(㎡)	2,800	2,720	5,520	
우수 배제 시설	수로관(1000×1000)	L = 828.0m		L = 815.0m		
	PC암거(1000×1000)	L = 23.0m		L = 20.0m		
	집수정(1.5×1.5×1.5)	3개소		4개소		
	집수정(1.2×1.2×1.2)	1개소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집수정(1.0×1.0×1.0)	1개소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집수정(0.8×0.8×0.8)	2개소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PC암거(1500×1500)	192.0m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PC암거(2000×2000)	274.0m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수로관(B500)	707.0m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수로관(B800)	190.0m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흙관(φ600)	520.0m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흙관(φ1000)	55.0m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PE이중벽관(φ1000)	36.0m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L형측구	1,108.0m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사각맨홀(2.5×2.5)	3개소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원형맨홀(φ1000)	19개소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저류지	1개소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지하수 배제 시설	지하수간선관로(PE유공관 D300)	L = 138.0m		L = 166.0m		
	지하수간선관로(PE유공관 D250)	L = 379.0m		L = 405.0m		
	지하수간선관로(PE유공관 D200)	L = 271.0m		-		
	이송관로(아연도강관 D250)	L = 71.0m		L = 71.0m		2개소
	이송관로(수도관,D65)	L = 65.0m		L = 65.0m		
	이송관로(수도관,D50)	L = 68.0m		L = 68.0m		
	지하집수정(3.0×3.0×3.0)	1개소		1개소		

〈 계 속 〉

구분	명 칭	제원 및 규격		비고
		1단계	2단계	
차수 시설	바닥부	침출수 집배수층(쇄석 $\phi 40\text{mm}$, $t=300\text{mm}$)		
		지오킴포지트($t=5.5\text{mm}$)		
		HDPE SHEET($t=2.5\text{mm}$) - Smooth Type		
		혼합토층($t=1,000\text{mm}$)		
		지하수배제층(부직포 300g/m^2)		
		지하수배제층(쇄석 $\phi 40\text{mm}$)		
		원지반		
	지하 사면부	1ton 백(Bag)		
		지오킴포지트($t=5.5\text{mm}$)		
		HDPE SHEET($t=2.5\text{mm}$) - Friction Type		
		벤토나이트매트($t=6.0\text{mm}$)		
		지오킴포지트($t=5.5\text{mm}$)		
		숏크리트($t=10\text{cm}$, 암반부 type-1)		
		지오킴포지트($t=5.5\text{mm}$, 암반부 type-2) 1겹 추가설치		
	지상부(사면부)	원지반		
		식생대층($T=60\text{cm}$ 이상)		
		부직포($1,500\text{g/m}^2$)		
		HDPE SHEET($t=1.5\text{mm}$) - Friction Type		
		점토광물혼합토($T=30\text{cm}$ 이상)		
침출수 집배수 시설	간선관로(PE유공관 D400)	L = 120.0m	L = 156.0m	
	지선관로(PE유공관 D300)	L = 360.0m	L = 306.0m	
	침출수이송관로 (내유성합성고압호스 D100)	L = 390.0m	L = 16.0m	
	침출수이송관로(SUS강관 D100)	L = 385.0m	L = 385.0m	
	연직배제정(유공흡관 D1200)	1개소	1개소	
	보조수위관측정(유공흡관 D800)	1개소	1개소	
	이경티(D400× 300)	10개소	12개소	
	엘보(45'× D300)	8개소	10개소	
	침출수누출감지시스템	면적 : 15,571㎡	면적 : 14,608㎡	
침출수 처리 시설	유량조정조 용량	935.0㎥ (W7.0m×L8.9m×H5.0m×3조)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유량계 설치	D100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시설용량	150㎥/일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침출수 처리방법	물리화학적처리+생물학적처리 (1차 처리 후 위탁처리)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가스배제 시설 및 처리 시설	수평 및 수직병행포집방식			
	포집반경	R = 30m	R = 30m	
	포집관경	PE유공관 D150	PE유공관 D150	
	수량	10개소	9개소	
지붕 시설	에어돔	LFG 재활용시설 (보일러용량 : 0.6ton/hr) 1식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1단계 43,152㎡	2단계 43,309㎡	
부대 시설	관리동	1개소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계량시설	W3.5m × L10.0m, 1기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세류시설	W5.16m × L2.2m, 1기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세차시설	W4.2m × L20.0m, 1기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지하수 검사정	D100, 3개소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울타리	W2.0m × H3.0m, L = 1,136.0m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표지판	W1.5m × H1.0m, 1개소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정문	W7.2m × H1.6m, 1개소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십정	1개소	1단계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 그림 1.5.3-1 > 매립시설 계획평면도



< 그림 1.5.3-2 > 매립계획 표준단면도

1.5.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 봉화군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 표 1.5.4-1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특성

구분	폐기물의 종류	형태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지정 폐기물	소각재 및 연소재 -지정폐기물 중 매립대상 폐기물	고상	03-05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오니류 -유기성오니, 무기성오니 : 수분함량 85% 이하 -오수, 하수, 축산분뇨, 폐수처리장의 오니류 : 수분함량 75% 이하	고상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폐토사, 폐석회, 폐석고 -지정폐기물 중 매립대상 폐기물	고상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도자기편류, 폐유리, 폐유리섬유, 폐보온재(폐암면등), 폐합성섬유 -지정폐기물 중 매립대상 폐기물	고상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4-01 폐내화물 03-04-02 폐도자기조각
	광재, 폐금속류 -지정폐기물 중 매립대상 폐기물	고상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폐촉매(비가연성) -지정폐기물 중 매립대상 폐기물	고상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고무류, 동식물성잔재물 -폐고무류 : 15cm이하로 절단·파쇄 후 매립 -지정폐기물 중 매립대상 폐기물	고상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폐폴리스티렌 01-01-09 폐아크리로나이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분진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매립	고상	03-02-00 분진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된 매립대상폐기물	고상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03-06-03 고화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03-06-05 폐선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그밖에 매립 대상 폐기물	고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한 매립 대상 폐기물

< 계 속 >

구분	폐기물의 종류	형태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재 및 연소재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매립대상 폐기물	고상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오니류 -유기성오니, 무기성오니 : 수분함량 85% 이하 -오수, 하수, 축산분뇨, 폐수처리장의 오니류 : 수분함량 75% 이하	고상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51-01-02 하수처리오니 51-01-03 분뇨처리오니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2-02 정수처리오니 51-02-03 하수처리오니 51-02-04 하수준설토 51-02-05 건설오니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51-02-10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폐수처리오니 51-02-11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공정오니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폐주물사 및 폐사,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매립대상 폐기물	고상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04 폐여과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 계 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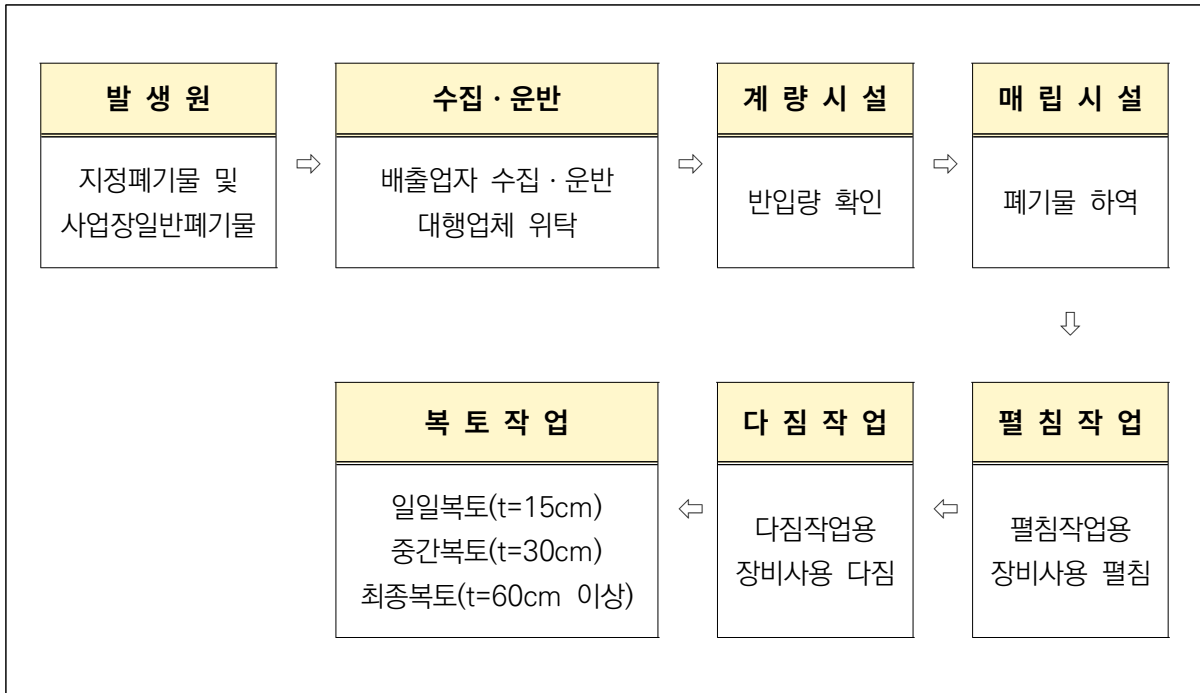
구분	폐기물의 종류	형태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사 업 장 일 반 폐 기 물	도자기편류, 폐유리, 폐유리섬유, 폐보온재(폐암면등)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매립대상 폐기물	고상	51-07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3 페스마트유리 51-30-04 폐유리섬유 51-30-05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이하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이라 한다)) 51-30-99 그 밖의 폐유리
	광재, 폐금속류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매립대상 폐기물	고상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4-04 선광공정광재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폐촉매(비가연성)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매립대상 폐기물	고상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51-10-03 페엠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고무류, 동식물성잔재물 -폐고무류 : 15cm이하로 절단·파쇄 후 매립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매립대상 폐기물	고상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품류 51-03-05 양식용폐부자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08 폐어망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 계 속 〉

구분	폐기물의 종류	형태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사업장일반폐기물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고무류, 동식물성잔재물 -폐고무류 : 15cm이하로 절단·파쇄 후 매립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매립대상 폐기물	고상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1 주정박 51-17-22 맥주박 51-17-23 유박유잔재물 51-17-24 초본류 51-17-25 커피찌꺼기 51-17-26 버섯폐배지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분진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포대에 담아 매립	고상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05-03 발전시설분진 51-05-04 폐실리카 폼(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된 매립대상폐기물	고상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고화 처리물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건설폐기물 -최대지름 50cm이하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후 매립 -폐합성수지는 최대지름 15cm이하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후 매립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후 매립	고상	40-01-01 폐콘크리트 40-01-0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40-01-03 폐벽돌 40-01-04 폐블록 40-01-05 폐기와 40-04-13 건설폐토석 40-03-10 건설오니 40-03-11 폐금속류 40-03-12 폐유리 40-04-10 폐타일 및 폐도자기 40-04-11 폐보드류 40-04-12 폐판넬 40-04-14 혼합폐기물 40-90-90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그밖에 매립 대상 폐기물	고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한 매립 대상 폐기물

○ 폐기물처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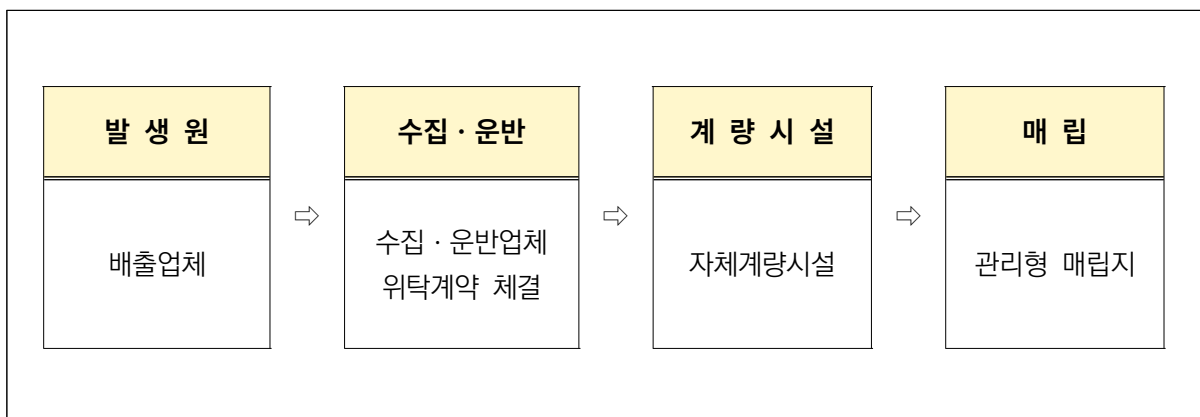
- 반입폐기물은 계량시설에서 반입량을 확인한 후 매립시설에 하역을 하고 장비를 사용하여 펼침과 다짐 작업을 하고 매립시설 사용종료 시 최종복토를 시행함



< 그림 1.5.4-1 > 반입폐기물 처분 계통도

○ 수집·운반계획

- 본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규정에 맞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 그림 1.6.4-2 > 와 같이 발생원에서 매립시설까지 배출업자와 수집·운반 업체간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하여 위탁토록 할 계획임



< 그림 1.5.4-2 > 반입폐기물 수집·운반 계통도

1.5.5 사후관리계획

- 폐기물관리법상의 매립장 사후관리기준을 적용한 사후관리계획(안)은 < 표 1.5.5-1 > 과 같음

< 표 1.5.5-1 > 사후관리계획(안)

구 분		지점수	조사빈도	비 고(측정항목)
침출수질		처리장 1개소	1회/분기 이상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
지하수질		3개소	매립후 3년 : 1회/월 3년 이후 : 1회/분기	지하수 오염 감시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
매립가스		LFG포집 1개소	매립 후 5년 : 1회/분기 5년 이후 : 1회/년	가스포집정 설치지점 외기온도, 가스온도, CH ₄ , CO ₂ , O ₂ , N ₂ , NH ₃ , H ₂ S, NO _x
구조물/지반 안정도유지	침하판	8개소	2회/년	침하판 설치지점
	경사계	2개소	2회/년	경사계 설치지점
지표수질		-	1회/분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질(하천)환경기준 항목
토양오염		4개소	1회/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 항목
방 역			11~4월 : 필요시 5월 : 1회/주 6~10월 : 2회/주	매립구역 대상
주변환경 종합보고서			1회/5년	

1.6 사업의 기대효과

- 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봉화군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매립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통하여 환경적,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가. 환경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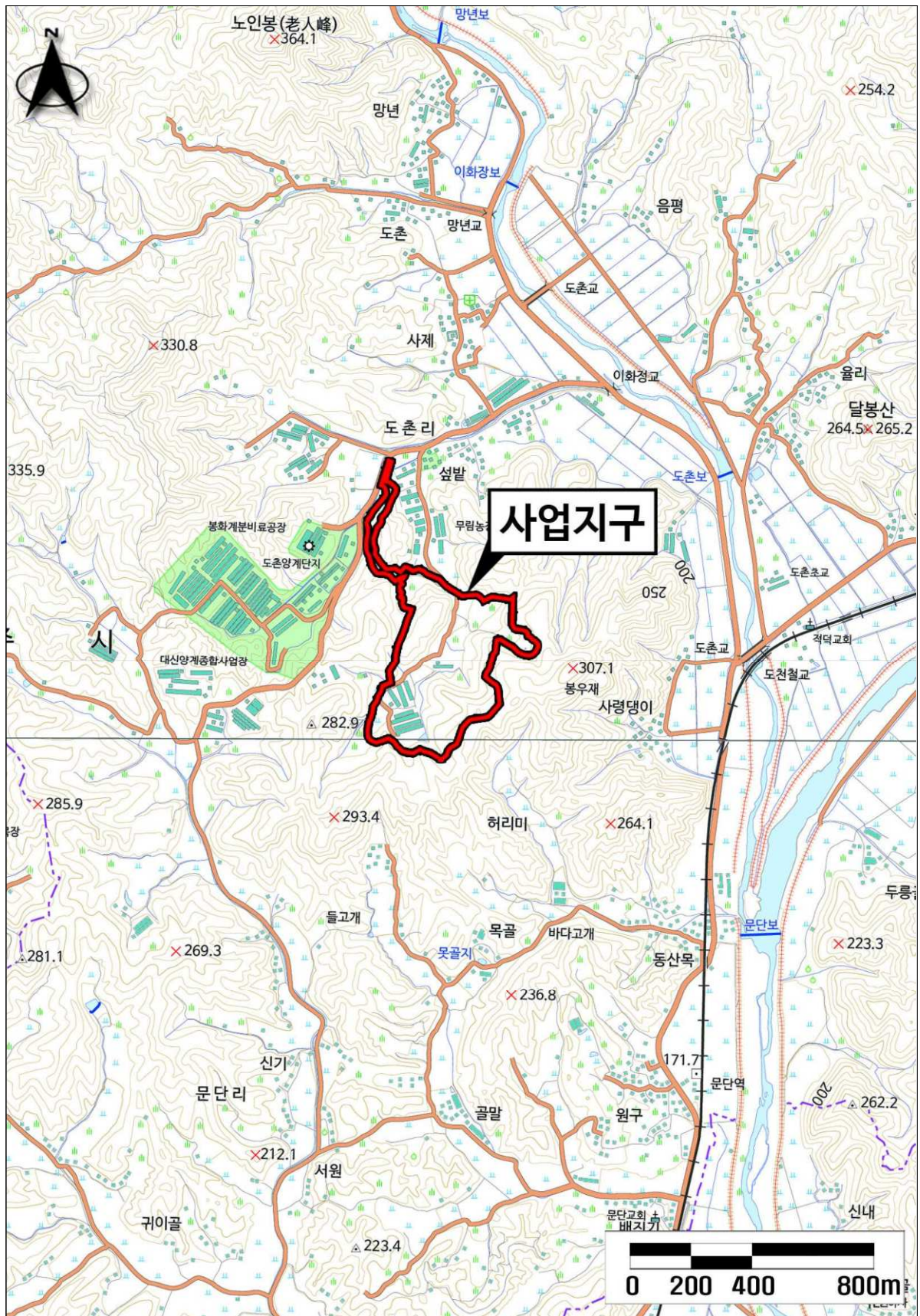
-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최종처분시설 확보
- 폐기물 매립시 발생하는 2차 환경오염물질의 외부누출 방지로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 유지
- 주변지형을 고려한 매립구조로 지역 미관저해 방지

나. 기술적 측면

- 안정적이고 위생적이며, 경제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확립
- 폐기물의 매립기술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기술 축적
- 관련 법규의 시설기준을 만족하는 매립시설의 설치
- 체계적인 폐기물 매립작업을 통한 효율적인 매립방안 수립

다. 사회경제적 측면

- 토지 이용의 합리화로 지역발전에 기여
- 기반시설 조성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 침출수 및 발생가스 처리로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 위상 확립
- 안정적인 매립시설을 확보하여 사회발전에 기여



< 그림 1-1 > 사업지구 위치도



< 그림 1-2 > 사업지구 위성도

제 2 장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2.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제2장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04.13,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 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2013.01, 환경부」 등의 자료와 사업지구의 입지특성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주요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본 사업은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 조성사업이며, 매립시설 형태를 개방형이 아닌 지붕구조 관리형 매립시설(Air Dome)로 계획함에 따라 상부의 환기부를 통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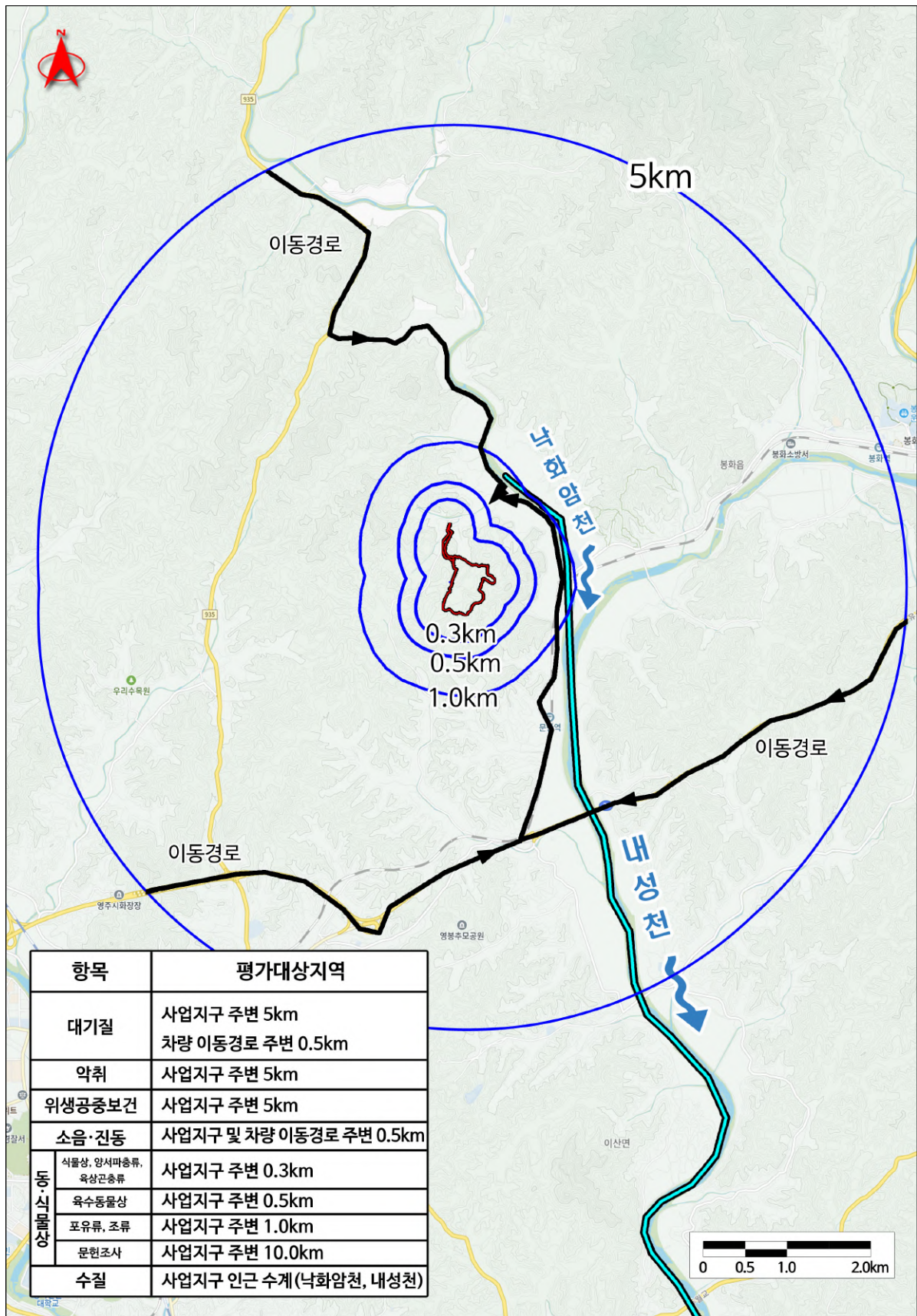
< 표 2.1-1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기준	평가대상지역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 예상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3~1.0km -식물,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0.3km -육수동물상 0.5km -포유류, 조류 1.0km ※문헌조사 10.0km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 예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 환경	기 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주요 항목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공사시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매립장비 가동 및 폐기물 운반차량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 발생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km 이내 •차량 이동경로 주변 0.5km 이내
	악취	•매립장 운영에 따른 악취물질 발생으로 인한 영향 예상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km 이내
수 환경	수 질 (수리·수문)	•운영시 매립장 침출수로 인하여 영향 예상	•사업지구 주변지역 수계 및 지하수
토지 환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사업지구
	토 양	•운영시 매립장 침출수로 인하여 영향 예상	•사업지구
	지형·지질	•사면발생에 따른 지형 및 지질의 영향 예상	•사업지구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운영시 매립장 운영에 따른 영향 예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공사시 공사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 진동 발생 •운영시 매립장비 가동 및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차량 이동경로 주변 0.5km 이내
	경 관	•사업지구 조성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경관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위생공중보건	•운영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영향 예상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km 이내
사회 경제환경	인구·주거	•사업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 및 주거의 변화 예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2.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표 2.2-1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평가대상지역
온실가스 감축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기후위기 적응	•운영시 기후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그림 2.1-1 > 평가대상지역 설정도(수정필요)

제 3 장

토지이용계획안

☐ 3.1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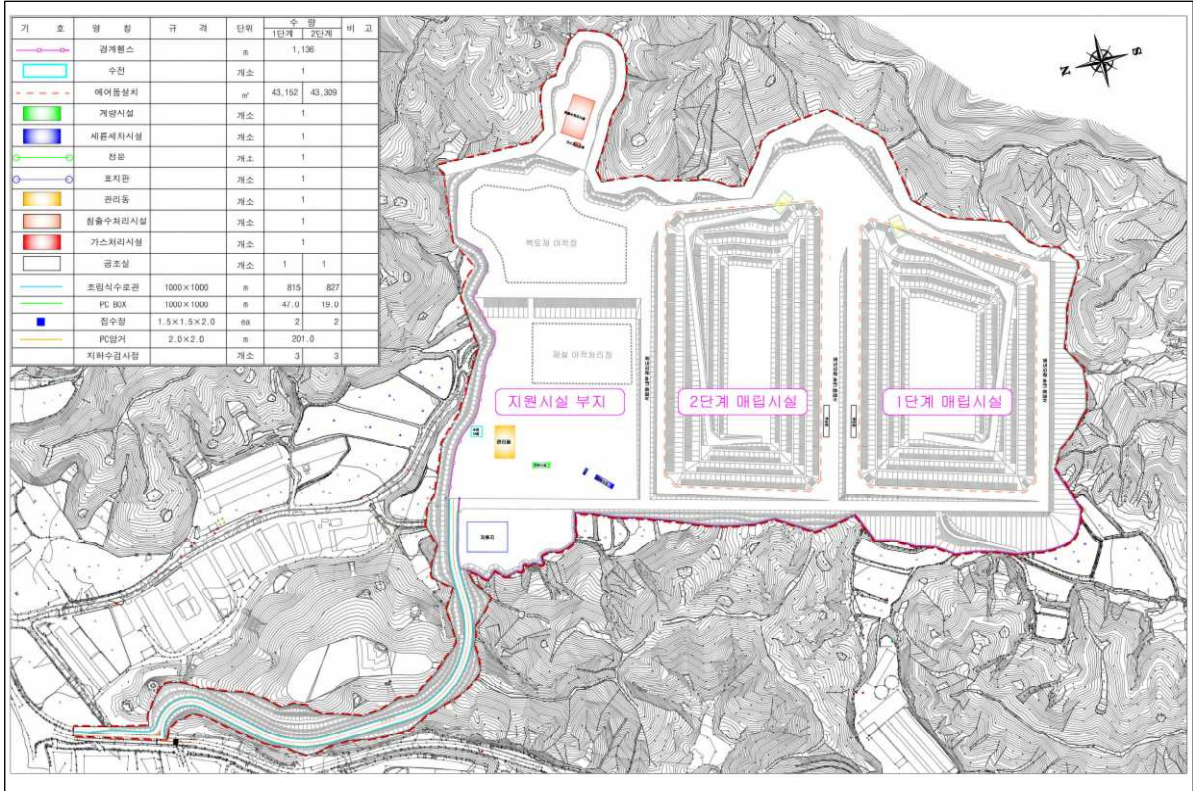
제3장 토지이용계획안

3.1 토지이용계획안

- 사업지구 내 매립시설은 총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진입도로와 사면녹지, 지원시설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 지원시설부지에는 관리동 및 계량시설, 세륜·세차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배치하여 매립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표 3-1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매립시설 부지	111,570	44.8
사면녹지	50,052	20.2
도로	22,765	9.1
지원시설	64,560	25.9
총계	248,947	100.0



< 그림 3-1 > 매립시설 계획평면도(안)



< 그림 3-2 > 토지이용계획(안)도

제 4 장

대안의 선정

4.1 대안의 선정

제4장 대안의 선정

4.1 대안의 선정

4.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조정, 시기·순서, 기타 등 6개의 종류로 구분함
- 대안은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대안 종류를 선정하여 대안검토를 실시하고, 환경적 측면, 안정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설정하고자함

< 표 4.1.1-1 >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류	내 용	선정유무	비고
계획 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 (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매립방법 •매립방식 •폐기물운반차량 이동경로 •침출수 처리계획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입지조정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4.1.2 대안의 비교·검토

가. 계획의 비교·검토(Action, No Action)

- 행정계획 수립시(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시(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 표 4.1.2-1 >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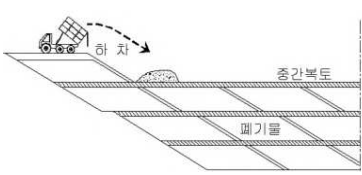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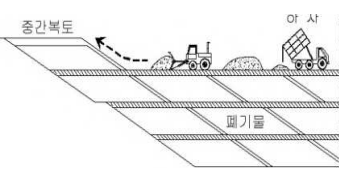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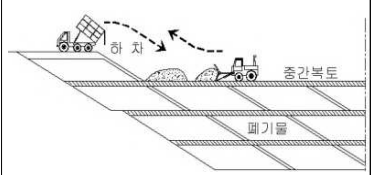
구분	계획 수립시(Action)	계획 미수립시(No Action)
내용	•봉화군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활하고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 환경오염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각종 오염에서 국토를 보호함 •인근 지역의 유희노동력을 고용하여 노동력의 활용 효과 및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제발전	•미개발로 현 상태 유지
장점	•토지 이용의 합리화로 지역발전에 기여 •기반시설 조성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안정적인 매립시설을 확보하여 사회발전에 기여 •사업부지 내 기존 축사 등을 수용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뇨 오수 등을 저감	•미개발로 현 상태를 유지하여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없음
단점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 발생	•현재의 현황을 유지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기존 축사 등의 존치로 지속적인 악취, 분뇨 오수 등 유발
선정 사유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 비교·분석 결과,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계획 수립시(Action)를 대안으로 선정함	
선정(안)	○	

나. 수단·방법에 대한 비교·검토

1) 매립방법

- 매립작업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운반, 다짐 및 복토작업 방법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상향, 하향, 조합매립방법이 있으며, 본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함
- 매립 1단 : 하향매립방법(바닥차수시설물 보호)
- 매립 2단 이상 : 조합매립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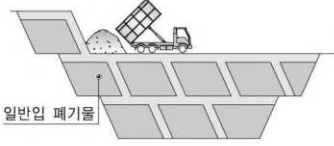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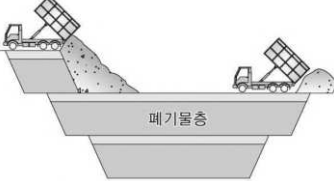
< 표 4.1.2-2 > 매립방법 비교

구 분	하향매립방법	상향매립방법	조합매립방법
단 면			
개 요	• 운반차량이 매립작업지점 상단부에 폐기물을 하역하면 매립작업지점으로 운반장비를 이용, 다짐장비가 다짐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높이로 펼치며 하향 운반 후, 다짐작업에 의해 폐기물을 다짐, 복토하는 방법 • 폐기물 운반차량의 접근지점인 상부층의 복토 작업이 신속히 시행되기 어려워 운반차량의 접근속도가 떨어져 자연 다짐지역에 폐기물을 하역하는 성향이 나타나며, 이 경우 1단 매립고가 점점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계획적인 매립지 운영기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운반차량이 매립작업지점 하단부에 폐기물을 하역하면 매립작업지점으로 운반장비를 이용, 다짐장비가 다짐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높이로 펼치며 상향 운반 후 다짐작업에 의하여 폐기물을 다짐하고 복토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상향작업에 비해 매립비용이 상승하나, 매립작업이 계획적으로 시행 되고 운반차량의 접근로 확보에는 대단히 유리함	• 상향 및 하향 매립방법을 조합한 방법으로 매립작업지점 상단부 및 하단부에 같은 양 또는 일정 비율의 폐기물을 하역한 후 다짐장비의 다짐 작업이 용이하도록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중간부까지 펼치며 운반 후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하고 복토를 시행하는 방법 • 매립작업 방법으로는 가장 경제적이며, 운반차량 교통량의 분산 등에도 상당히 효과적 이나 매립작업 상단부에서 하향매립 방법의 단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적용 조건	• 매립지 하단 바닥부의 지지력이 확보되지 않아 운반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도랑매립방식에 의한 경우		• 매립부지가 넓고 내부 작업 도로에서의 운반 차량 분산이 가능한 경우
선정(안)	○(1단)		○(2단 이상)

2) 매립방식

- 매립방식은 폐기물의 종류, 매립지의 지형, 반입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방식으로는 샌드위치방식, Cell방식, 투기방식 등이 있음
- 각 매립방식별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주변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한정된 매립용량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매립시설의 지형, 매립에 따른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Cell방식에 의해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함

< 표 4.1.2-3 > 매립방식에 따른 매립방식 비교

구 분	Cell 방식	샌드위치방식	투기방식
단 면			-
개 요	• 샌드위치 방식처리 하되 매립폐기물의 사면에 매일 복토를 시행(지붕형 매립구조로 일일복토는 반입폐기물 중 폐토사, 폐주물사 등으로 할 계획임)	• 폐기물층과 복토층을 샌드위치처럼 깔며 폐기물의 사면에 대한 매일복토를 하지 않음	• 매립지상부에서 폐기물을 쏟아 붓고 중간복토를 시행하지 않음
기반 시설비	동 일	동 일	동 일
보상비	동 일	동 일	동 일
유지·관리 (비율)	1.3	1.0	0.6
2차공해의 발생	양 호	양 호	불 량
악 취	최대한 억제	다소 발생	가장 심함
침출수량	가장 적음	다소 적음	가장 많음
해충서식	가장 적음	다소 심함	가장 심함
선정(안)	○		

3) 매립시설 형태

- 매립시설의 형태에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개방형 매립시설과 폐쇄형(지붕형 에어돔) 매립시설이 있음
- 각 매립시설 별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침출수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폐쇄형(지붕형 에어돔)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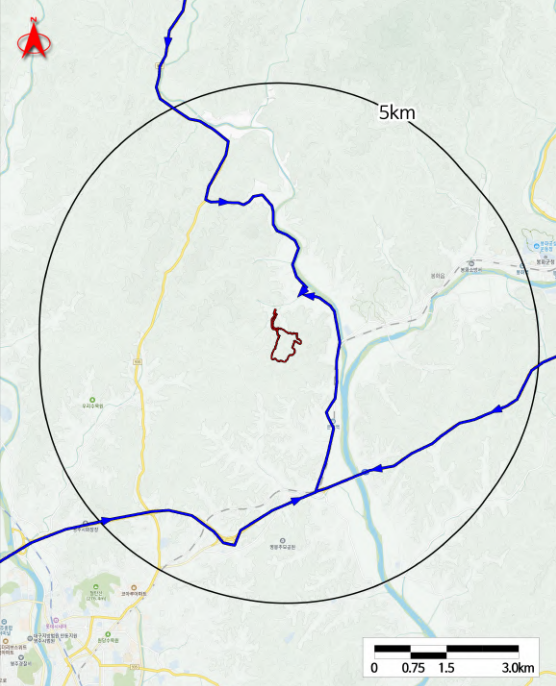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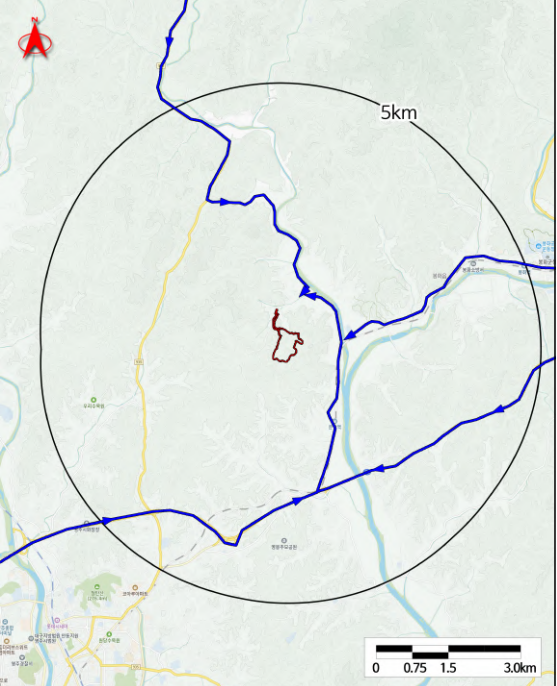
< 표 4.1.2-4 > 매립시설 형태별 비교

구 분	폐쇄형(지붕형) 매립시설	개방형(일반) 매립시설
자연환경 (강우) 영향	•지붕 등으로 폐쇄되어 있어 매립지를 강우나 기상조건으로부터 조절 가능	•기상 조건을 직접 받아 매립지의 조절 곤란
외부 영향	•에어돔 설치로 인해 폐기물 비산, 악취, 해충 등의 외부 영향이 거의 없음	•기상 조건에 따라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으며 외부와 차단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 비산, 악취, 해충 등이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내부 환경	•폐쇄공간이므로 내부 작업환경 유지를 위해 인공적으로 필요한 대책 실시	•개방형 구조로 환기 등이 용이하며 작업 환경이 우수함
공사비	•지붕 설치로 인해 공사비 증대 •침출수 처리설비 공사비 감소	•침출수 처리 설비공사 증대
유지·관리비	•매립지의 안정화가 빨라지면 유지관리비가 저렴해짐	•침출수 처리설비의 운전비가 폐쇄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출
침출수 처리시설	•설비 규모는 인공강우량으로 결정됨 •개방형에 비해 설비규모가 작아짐	•설비규모는 대 강우시의 강우 규모로 결정
차수공	•개방형과 동일	•2중 차수공(시트+점토차수층)
침출수 집배수시설	•개방형과 동일	•바닥부 집배수관, 연직집배수관 배치
지하수 집배수시설	•개방형과 동일	•바닥부에 지하수 집배수관 배치
선정(안)	○	

4) 폐기물 운반차량 이동경로

-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운반경로를 검토한 결과, 거주 밀집지역인 봉화군 시내를 우회하여 대안 1을 선정함

< 표 4.1.2-5 > 폐기물 운반차량 이동경로 비교

구분	대안 1	대안 2
장점	•봉화군 시내를 우회하여 차량 이동으로 인한 비산먼지, 악취, 소음·진동의 영향 최소화	•봉화군 시내를 횡단하는 경로를 추가하여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용이
단점	•이동경로 제한으로 폐기물 운반 시간 증가	•봉화군 시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시민이 차량 이동으로 인한 비산먼지, 악취, 소음·진동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이동 경로 계획		
선정 사유	•거주밀집지역을 우회하여 차량 이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1을 선정함	-
선정 (안)	○	

5) 침출수 처리계획

- 매립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침출수는 1차 처리 후 위탁처리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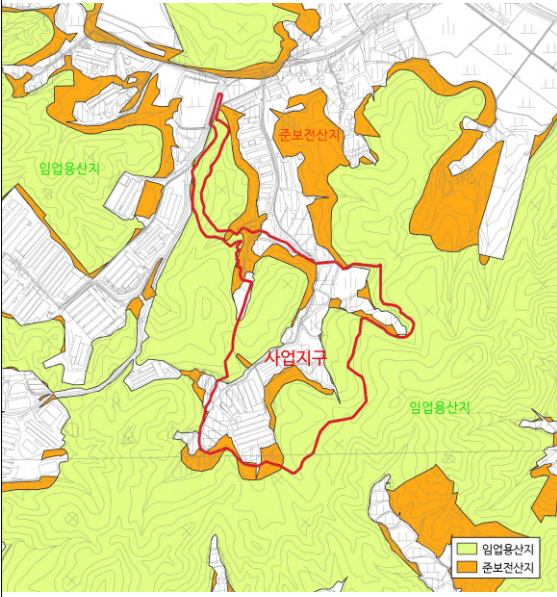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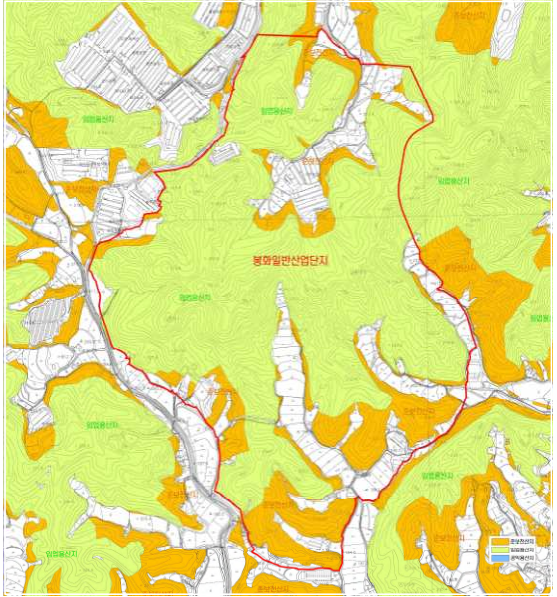
< 표 4.1.2-6 > 침출수 처리계획 비교

구분	1차 처리 후 위탁처리	자체처리 후 방류
개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사업지구 내에서 1차 처리 후 전문업체를 통해 전량 위탁처리	•매립시설 내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조성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자체 처리 후 인근 하천으로 방류
장점	•침출수 관련 민원 발생 없음 •연계 처리시설 부하 없음 •인근 수계에 영향 없음	•침출수 특성에 따른 공정 선택 용이 •안정적인 처리 가능
단점	•침출수 운반 차량에 의한 환경영향 예상	•자체 처리시설의 유지관리가 어려움 •처리수 방류에 따른 민원 발생
선정 사유	•사업지구 내 자체 처리시설은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시설 고장 등이 발생할 시 침출수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침출수를 처리 후 방류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1차 처리 후 위탁처리 방안을 선정함	-
선정 (안)	○	

다. 입지에 대한 비교·검토

- 입지에 대한 검토 결과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1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표 4.1.2-7 > 입지조정

구분	대안 1	대안 2
장점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편입용지 계획으로 식생 및 지형훼손이 적음	•편입용지의 충분한 확보로 토지이용에 대하여 제약이 적음
단점	•비교적 편입용지가 작아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이 있음	•편입용지가 크고 대부분이 양호한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림 훼손으로 인한 식생 및 지형훼손이 불가피하여 과도한 환경 피해가 우려됨
입지 계획		
선정 사유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1을 선정함	-
선정 (안)	○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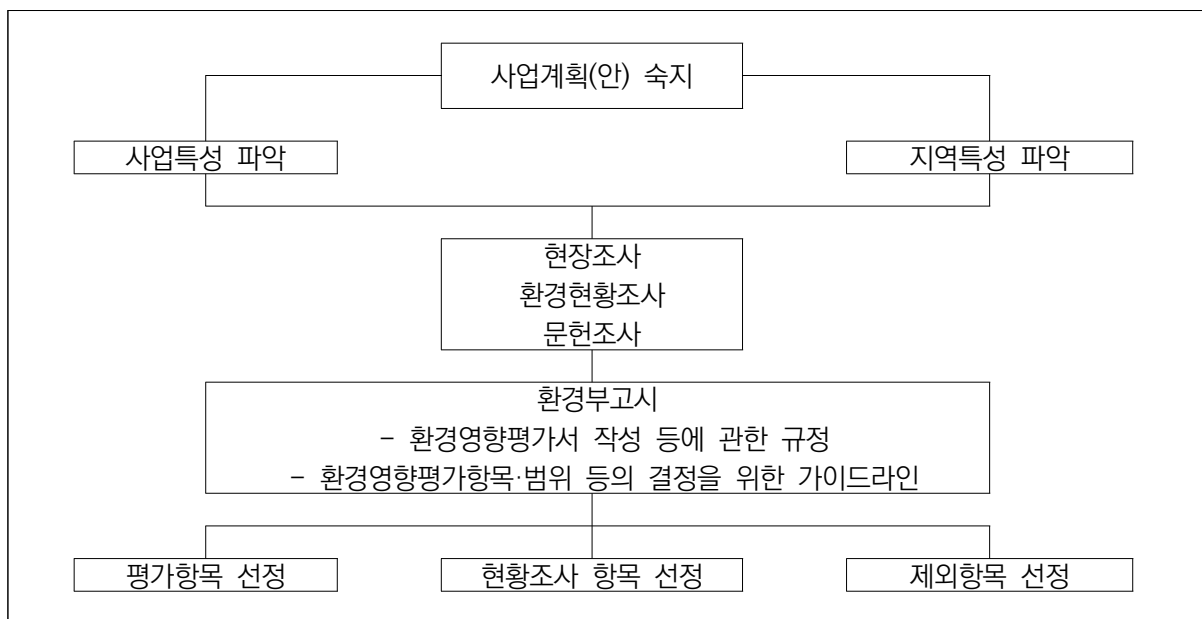
- ☐ 5.1 평가항목의 선정
 - ☐ 5.2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 5.3 환경질 조사지점 및 선정사유
-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의 선정

5.1.1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은 사업특성 및 지역특성을 파악한 후 현장조사와 환경현황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된 환경부고시 및 지침을 참조하였음
-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등에 제시된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선정 참고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주요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사업특성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2차적으로 주요 평가항목과 현황조사항목 및 제외항목을 선정하였음



< 그림 5.1.1-1 >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 표 5.1.1-1 >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구 분	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환경	대기질, 악취	기상	온실가스
수환경	수질(수리·수문 포함)		해양환경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애, 일조장애
사회경제환경	인구·주거		산업

- 사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2개 항목을 환경현황 조사항목으로 나머지 5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으며,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는 < 표 5.1.1-2 > 와 같음

< 표 5.1.1-2 >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평가항목 (12개)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 예상
	대기질	•공사시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매립장비 가동 및 폐기물 운반차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 취	•매립장 운영으로 인한 악취발생
	수 질 (수리·수문)	•운영시 매립장 침출수로 인하여 영향 예상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 양	•운영시 매립장 침출수로 인하여 영향 예상
	지형·지질	•사면발생에 따른 지형 및 지질의 영향 예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운영시 매립장 운영에 따른 영향 예상
	소음·진동	•공사시 공사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운영시 매립장비 가동 및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경 관	•사업지구 조성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경관변화
	위생·공중보건	•운영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 예상
	인구·주거	•사업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 및 주거의 변화 예상
현황조사 항목(2개)	자연환경자산	•문헌자료를 통한 사업지구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기 상	•주요 항목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제외항목 (5개)	온실가스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포함
	해양환경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전파장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함
	일조장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함
	산 업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함

5.1.2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2023.07.25, 환경부」를 참조하여 선정

< 표 5.1.2-1 >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선정(제외) 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평가항목 (2개)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공사시 장비투입, 운영시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온실가스 감축목표·감축 전략·방안 수립 및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기후위기 적응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 현황,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파악, 기후요소, 대기환경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변화폭 및 미래 전망을 조사하여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 수립,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기후위기 취약성 ·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인자별 취약성 및 위험성이 예상

5.1.3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 간 행렬식 대조표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관계를 비교·검토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하였음

< 표 5.1.3-1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단 계		공사시			운영시	
평가항목	환경영향요인	공사장비 가동	부지 조성 공사	공사인부 투입	매립시설 운영	매립시설 운영종료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
	자연환경자산		△			
대기 환경	기 상		△			
	대기질	△			△	△
	악 취				○	△
수 환경	수 질		○	△	○	△
	수리·수문		○			
토지 환경	토지이용					●
	토 양	△	△	△	△	△
	지형·지질		◎			
생활 환경	친환경적자원순환	△	○	△	△	
	소음·진동	◎			△	
	경 관		○		○	◆
	위생·공중보건				○	△
사회경제 환경	인구·주거					
범례	●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효과는 미약하다 △ : 악영향이 있으나 미약하다 ○ : 악영향이 다소 있다 ◎ : 악영향이 크다					

5.2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5.2.1 조사·예측의 방법

- 본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 표 5.2.2-1 > 과 같음
- 조사는 원칙적으로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사업지구에 대한 세부 환경현황을 파악하고자 환경질 측정조사 및 동·식물상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 영향예측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사업시행시 주변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할 계획임
- 영향예측 결과 주변에 악영향이 있을 경우 적절한 환경보전방안 수립

5.2.2 평가방법

- 평가항목마다 본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리하고, 환경영향을 회피 또는 저감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도출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표 5.2.2-1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영향예측 방법
동·식물상	① 조사내용 - 자연현황(식생현황, 수변·습지 등의 분포,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3~1.0km 이내 - 식물,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0.3km - 육수동물상 0.5km - 포유류, 조류 1.0km ※ 문헌조사 10.0km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자연환경 자산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기상	① 조사내용 및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기상현황 ② 조사방법 : 사업지구 주변 AWS 및 기상대자료 조사	•사업지구 주변 AWS 및 기상대 자료 조사 후 영향예측시 기초 자료로 이용
대기질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도(8개 항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km 이내 ③ 조사방법 : 현지 측정조사 ④ 조사지점 : 11개 지점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을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악취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악취현황(23개 항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km 이내 ③ 조사방법 : 현지 측정조사 ④ 조사지점 : 11개 지점	•운영시 악취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을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 계 속 >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영향예측 방법
수 질	① 조사내용 -주변하천 및 지하수에 대한 수질현황농도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주변지역 수계 및 지하수 ③ 조사방법 : 현지 측정조사 ④ 조사지점 : 지표수질 8개, 지하수질 7개 지점	•운영시 침출수 및 비점오염에 의한 영향 예측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변화 파악
토 양	① 조사내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 현황(23개 항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측정조사 ④ 조사지점 : 4개 지점	•운영시 토양오염물질 발생 예상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토지의 안정성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지형의 변화, 토지 및 사면안정성 등을 예측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운영시 발생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소음·진동 현황측정 및 주요 발생원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 및 폐기물 운반차량 이동 경로로부터 0.5km 이내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9개 지점	•운영시 소음·진동 영향예상지역에 대하여 예측
경 관	① 조사내용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실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위생· 공중보건	① 조사내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건강영향물질 현황 (6개 항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km 이내 ③ 조사방법 : 현지 측정조사 ④ 조사지점 : 11개 지점	•운영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영향 예측
인구·주거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인구 및 주거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사업관련 개발계획	•사업지구 조성으로 인한 인구 및 주거에 미치는 영향 예측

< 표 5.2.2-2 >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내용·범위	영향예측 방법
온실 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① 조사내용 : 온실가스 배출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온실가스 배출시설, 배출계수, 배출량, 저장·흡수량 현황 등을 파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① 조사내용 : 온실가스 배출 량 예측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고려하여 산정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임업, 축산업, 폐기물 등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전망치 산정 -온실가스 배출계수, 사업지구 면적, 인구등 활용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① 조사내용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방안제시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연계하여 감축목표·감축 전략·방안 수립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검토 -신·재생에너지 사용, 녹색건축물 적용, 탄소 흡수원 조성(공원, 녹지), 토지이용계획 등 •분야별 예측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수립·제시 -사업시행에 따른 분야별 감축 및 탄소 흡수원 확대방안 강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관할 지자체의 시·도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 반영여부 제시
기후 위기 적응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① 조사내용 : 기후요소 현황 및 극한기후지수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기후변화 현황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제시 •기후요소, 대기환경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변화폭 및 미래 전망 제시 -기후요소 : 기온, 강수, 습도, 풍향, 풍속 등 -극한기후지수 :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서리일수, 결빙일수, 호우일수 등 •발생빈도, 경향·주기, 피해유형, 피해대상, 피해규모 등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사례 조사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① 조사내용 : 기후변화 취약 성 및 위험성 예측·분석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사업에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예측·분석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작성,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 도출 -리스크 목록 활용(국가 기후변화 등)
	기후위기 취약성 ·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	① 조사내용 : 기후변화 영향 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 략 및 방안 수립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취약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리스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 수립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계획 및 시책, 관련 지자체의 도시·군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 반영여부 제시

5.3 환경질 조사지점 및 선정사유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사업시행 전·후 환경변화)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환경질 조사항목 : 대기질, 악취,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생·공중보건
- 동·식물상 조사는 사업지구 및 인접수계를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조사를 실시

< 표 5.3-1 > 환경질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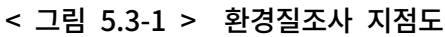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대기질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8항목)	11지점
악취	•복합악취,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틸알코올(23항목)	11지점
지표수질	•pH, SS, BOD, DO, COD, 총질소, 총인, TOC, 총대장균군, ABS, PCB, CN, As, Cd, Hg, 유기인, Pb, Cr ⁶⁺ (18항목)	8지점
수질측정망 (자료)	•BOD, COD, TOC, 총질소, 총인, DO, 클로로필-a (7항목)	3지점
지하수질	•pH, 증발잔류물, KMnO ₄ 소비량, NH ₃ -N, NO ₃ -N, CN, Hg, F, Cr, 페놀, As,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경도, ABS, Fe, Mn, 탁도, 냄새, 색도, 맛, Zn, SO ₄ ²⁻ , Cl ⁻ , Cd, Cu, Pb, 셀레늄,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보론,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Al, 1,4-다이옥산 (46항목)	7지점
토양	•pH,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s, CN,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23항목)	4지점
소음·진동	•주·야간 소음도 및 진동도	9지점
위생· 공중보건	•염화비닐, 에틸벤젠,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6항목)	11지점

< 표 5.3-2 > 조사지역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비고
동·식물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주변 0.3~1.0km
대 기 질	•사업지구 주변 주거 밀집지역 주요 정온시설	주변 정온시설
악 취	•사업지구 주변 주거 밀집지역 주요 정온시설	주변 정온시설
지표수질	•사업지구 주변 하천	낙화암천, 내성천, 소하천
지하수질	•사업지구 주변 지하수 이용 정온시설	주변 정온시설
토 양	•사업지구 내부 토양	사업지구 내
소음·진동	•사업지구 주변 주요 소음·진동 발생원 및 주요 정온시설	주변 정온시설
위생·공중보건	•사업지구 주변 주거 밀집지역 주요 정온시설	주변 정온시설

< 표 5.3-3 > 환경질 조사지점 및 선정사유

구 분		조 사 지 점	선정사유
대기질, 악취, 위생· 공중 보건	A-1	영주시 조와동 103	마을
	A-2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355	축사
	A-3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393-18	마을
	A-4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405-1	마을회관
	A-5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891-1	학교
	A-6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58	마을
	A-7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27-2	경로당
	A-8	봉화군 봉화읍 솔안2길 10-1	마을회관
	A-9	영주시 이산면 이산로 487	학교
	A-10	영주시 조와동 458-3	양로원
	A-11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388	마을회관
지표 수질	W-1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535-1 인근(소하천)	소하천
	W-2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652-20 인근(소하천)	소하천
	W-3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702-2 인근(낙화암천)	낙화암천
	W-4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104-3 인근(낙화암천)	낙화암천
	W-5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219-2 인근(내성천)	내성천
	W-6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771-6 인근(내성천)	내성천
	W-7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703-2 인근(내성천)	내성천
	W-8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1200-24 인근(내성천)	내성천
	W-9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영주댐4)	측정망(자료)
	W-10	영주시 이산면 신천리(영주댐3)	
	W-11	영주시 평은면 천본리(토일천)	
지하 수질	GW-1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405-1	마을회관
	GW-2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551-1	축사
	GW-3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891-1	학교
	GW-4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334	민가
	GW-5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562-4	축사
	GW-6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104-29	양어장
	GW-7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652-17	축사
토양	S-1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 49	임야
	S-2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370	답
	S-3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 73-14	임야
	S-4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891-1	학교
소음 · 진동	N·V-1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551-1	축사
	N·V-2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355	축사
	N·V-3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393-18	마을
	N·V-4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891-1	학교
	N·V-5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104-29	양어장
	N·V-6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380-2	마을
	N·V-7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98-1	마을
	N·V-8	영주시 상망동 190-8	민가
	N·V-9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1	민가



제 6 장

약식평가절차 신청여부

제6장 약식평가절차 신청여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 최소규모의 200% 이상에 해당되어 약식평가 절차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표 6-1 > 약식평가절차 대상여부 검토결과

구 분	검 토 기 준	검 토 결 과
사 업 규 모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사업규모가 평가대상 최소규모의 698%로 약식평가 대상규모에 해당되지 않음 ① 산지전용 156,338㎡/20만㎡ ②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매립용적 156만㎡/330만㎡ ③ 지정폐기물 매립용적 1,040,000㎡/25만㎡ ④ 토석채취 면적 156,338㎡/10만㎡ ※ 총 합계 평가대상 규모의 698%
지 역 특 성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의 지역이 존재하는지 여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제 7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 7.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 7.2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7.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본 계획의 승인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 표 7.1-1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법적근거(환경영향평가법)

관련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	⑦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 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7.2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표 7.2-1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법적근거(환경영향평가법)

관련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7.2.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본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할 것임
- 또한,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에 공람기간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7.2.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본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요약서를 공개하여 2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요약서 작성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쪽 내외로 작성할 것임
- 또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개하여 2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평가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공람장소는 추후 협의)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와 함께 ‘평가서초안 열람부’ 및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을 비치할 것임

7.2.3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람기간 중 1회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7.2.4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봉화군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할 것임

7.2.5 관계기관 의견 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제 8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8.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였음

8.1.1 심의방법 및 심의사항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사항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 구상안,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그 밖에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주관행정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 협의회 개최 : 서면심의 실시
- 본 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이며,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협의회 구성위원 중 건강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분야 전문가를 포함함

< 표 8.1.2-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위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위원장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박○○	
위원	대구지방환경청	자원순환과장	김○○	
위원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고○○	
위원	봉화군청	환경기획팀장	손○○	
위원	봉화군의회	군의원	김○○	
위원	봉화읍	이장협의회장	황○○	
위원	한국수자원공사(봉화수도지사)	차장	김○○	
위원	안동대학교	교수단	김○○	
위원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김○○	
위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안○○	
위원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8.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붙임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봉화군 도촌리 폐기물매립시설] □ (안건 및 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총괄 의견 ○ 본 사업은 봉화군 도촌리에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제시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①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평가대상지역은 평가항목 중 영향 범위가 가장 큰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등 주변의 계획 중인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영향범위 및 시기가 중첩되는 지역은 누적영향을 조사하여야 함. ② 환경보전방안 대안의 적정성 - 사업 및 입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제시 하여야 함. ③ 평가항목·범위·방법 설정의 적정성 - 사업시행으로 직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여야 함 - 저감방안은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저감방안 선정 시 그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④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의견수렴 시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은 지역주민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함. - 주민 대다수가 기피하는 폐기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이므로,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함. ⑤ 기타 -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조정하는 등 조정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검토함. 2025. 1. . 심의위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심의의원1	
[붙임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봉화군 도촌리 폐기물매립시설] □ (안건 및 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총괄 의견 ○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①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별첨 ② 환경보전방안 대안의 적정성 - 별첨 ③ 평가항목·범위·방법 설정의 적정성 - 별첨 ④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등의 의견은 현재 반대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부로 대신하고자 함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⑤ 기타 - 별첨 ※ 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사항 등 위와 같이 검토함. 2024. 12 . 26 . 심의위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1.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봉화군은 전체면적1,201km로 청정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공원에 둘러싸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사업대상지가 되는 곳은 낙동강의 시원이 되는 내성천의 지류로서 부근의 모든 물은 내성천으로 흘러들어 영주댐을 지나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폐기물매립지로 신청된 도촌리 마을은 1450년경 도촌 이수형이 개척한 이래 우계이씨들이 오랜 세월 터를 잡아온 곳으로 단종을 기리는 충신의 마음이 담긴 공복천, 도계서원등이 자리잡은 아름다운 마을입니다.3,40여년 전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한 계사, 돈사등이 대규모화되면서 시작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마을의 악취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으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등으로 개입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년전 폐기를 소각장 유치의 건으로 군내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나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역에서는 업체에서 매립한 토지를 포함하여 농촌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었으나 금번 제이팩의 사업준비로 인해 다시 봉화군내에 많은 반대 의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구 임종득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박현국군수, 권영준의장을 포함한 의원전부, 도촌1리 마을을 제외한 전체 군민들이 집회를 하며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2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을 통하여 군수의 답변을 요청한 바, 군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주민의 의견에 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셨고 의회에서도 농촌환경재구조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이 행복한 봉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찬성한 주민들중에서도 환경을 개선하여 악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주면 매몰지 조성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성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4km에 불과한 낙화암천이 단지 폐기를 매립시설 설치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립지로 선정이 된다면 내성천 상류로부터 영주댐, 낙동강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답게 살고 있는 마을을 해체하는 큰 원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촌1리를 제외한 인근의 봉화읍, 물아면을 포함한 봉화군 전체 나아가서 인근의 영주시의 주민들 역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되어 지역소멸을 더욱 부추길
심의의원2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기물 매립지는 오랜 역사를 지닌 청정봉화의 이미지는 물론, 봉화의 경제의 주축인 농업 뿐 아니라 청정자연을 주력으로 하는 봉화의 관광사업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양한 폐기물의 매립장은 물론 필요하리라 생각하지만만 봉화전체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의 몇백 배에 이르는 폐기물이 하필 낙동강 상류에 그것도 길이 깊어 물이 맑은 봉화군에 묻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환경보전방안의 적정성 도천1리는 양계, 양돈을 주로 하는 대,중,소규모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주민들이 많은 곳으로 생활용수는 상수도용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축산을 위한 용수는 대형, 중형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수계현황상 영향 범위밖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모든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지표에서 지하로 흐르므로 보면 폐기물의 성격상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매립설치 제한지역인 1km이상 이격하였다고 가능하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본류로부터 22km이상 떨어진다고 하나 오염원이 배출될 경우 불과7.8시간이면 영주댐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또한 낙동강 입구까지는 80km, 평균유속값을 대표유속으로 할 경우 55시간이면 유입된다고 합니다.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의 식수, 생활용수, 가축을 사용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물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이 시작되고 실태를 파악하기 까지의 시간과 파악후 처리에 관한 시간과 절차, 주민들의 두려움등을 생각한다면 낙동강상류의 폐기물매립장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폐기물수송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근처의 비산등으로 인한 변화 역시 조율한 농촌마을은 물론 인근 도촌초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폐기물의 운반으로 인한 조용했던 사골마을의 교통혼잡이 초래할 주민 불편은 물론 인근 지역의 양어장, 친환경농산물등에도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신청업체의 신청내용에 따르면 각종 소각재 및 연소재, 오니류, 폐토사, 폐석고, 폐금속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분진, 폐유리섬유,폐고무류, 동식물성잔재물,건설폐기물등을 매립하여 폐철과 다짐작업을 하고 복토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봉화군 자체에서 생산되는 가연성생활쓰레기는 대부분 매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안동시에 위치한 맑은 누리파르에서 처리되고 연탄재 등 비가연성폐기물은 현재의 매립장을 최대한 아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사업장폐기물등의 지정폐기물은 별도로 신고후 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폐기물조차 혹시 있을 환경오염이나 지역의 오염을 막기위해 최대한 처리에 고심을 기하고 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는 봉화군에 업체에서 주장하는 전국의 폐기물을 모아 매립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은 물론 환경을 생각하는 국민들 모두는 반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평가항목, 범위 방법 설정의 적정성등 내성천상류에 위치한 매립예정지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의 경우 평가대상 지역으로부터 0.3km이내에서 2km 이내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설정하였다고 하나 산이 높고 골이 깊은 봉화의 특성상, 그리고 역사적인 공간이 인접해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매립예정지 주변은 물론 매립예정지 주변의 친환경농산물, 송어양식장, 은어양어장과 초등학교를 포함한 지역 전체를 포함시켜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교통망증가로 인한 인근 도로의 상황 역시 생각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골이 깊어 땅속으로 흐르는 물이 많은 봉화의 지형적인 특성상 반드시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은 면적을 내정된 상류로 확대하여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폐기물 수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주변의 분진, 혼잡에 관한 사항들도 주변의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제시하는 영향평가의 범위는 너무 미미하여 실제 사업이 시작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넓게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는 조사를 통한 환경의 변화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역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주민등의 의견수렴계획 주민등의 의견은 현재 반대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부로 대신하고자 함 5. 기타 봉화군은 이미 1996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석포면 승부리 255번지에 광채, 분진, 폐주물사, 폐사,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금속원류, 오니류, 폐합성수지류등을 업체에서 매립한 경향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사후관리까지 장담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2002년 3월 업체의 폐업신고하였으며 이후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국비 4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22억원등 총 82억원의 비용을 들여 승부매립장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봉화군에서는 침출수 처리를 위한 협약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억 4천만원, 2022
년 2억 6천만원, 2023년도 3억원, 2024년 3억4천만원의 비용을 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촌1리 폐기물매립장사태를 보며 또 다시 승부매립장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약속도 없으며 지역의 불편을 이용한 폐기물 매립업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매립지 인근의 도촌1리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견학등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옆의 도촌2리는 물론 봉화읍, 봉화군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향평가나 설명회가 있어야 함에도 사업진행을 위해 일부 지역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업체가 제시한 환경의 중요성과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정지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소멸위 기지역의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봉화에서 살고 앞으로 살아갈 주민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의하는 의원으로서 본인은 다시는 봉화군을 포함한 지역중 산간오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폐기물매립지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환경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가 쉽다는 이유로, 매립이 쉽다는 이유로 앞으로 살아갈 터전을 쉽게 내주고 후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예정지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고민하고 방법을 제시하여 청정봉화의 살기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은 물론 의회와 주민 모두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봉화에서 폐기물에 관한 사업이 거론되지 않도록 깊이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

심의의원2

[붙임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봉화군 도촌리 폐기물매립시설] ☐ (안건 및 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총괄 의견 ○ 오염수 유출, 주민 의견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①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주변에 농가 및 대규모 양계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유출수가 발생할 경우 낙화암천이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수 유출에 대한 철저한 방지 대책 강구 필요 ② 환경보전방안 대안의 적정성 - 적절함 ③ 평가항목·범위·방법 설정의 적정성 - 적절함 ④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폐기물 매립시설은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⑤ 기타 - ※ 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사항 등 위와 같이 검토함. 2024. 12. 29. 심의위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붙임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봉화군 도촌리 폐기물매립시설] ☐ (안건 및 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총괄 의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적 영향 최소화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①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설정 ② 환경보전방안 대안의 적정성 - 대안설정은 적정함 ③ 평가항목·범위·방법 설정의 적정성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를 수립하기 바람 ④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수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바람.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⑤ 기타 - 의견 없음 ※ 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사항 등 위와 같이 검토함. 2024. 12. 29. 심의위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심의의원3	심의의원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봉화군 도촌리 폐기물매립시설] ☐ (안건 및 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총괄 의견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①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사업대상 지역은 주택 및 축산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폐기를 처리를 위한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교통 문제 및 소음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침출수 유출 시 낙화암천(영주댐 유입 지류)으로 유입되어 낙동강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활 환경 및 수질 분야 측면으로 볼 때 대상지역 설정에 대한 분석 및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② 환경보전방안 대안의 적정성 - 제시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한 결과 평가항목별 기존 및 매립방·방식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어 향후 폐기를 처리시설 설치 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동 시설 설치 후 수질·대기·자연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영향을 크게 미칠것으로 판단되나 각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③ 평가항목·범위·방법 설정의 적정성 - 예여동 형식으로 처리장을 설치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처리장 내 유해가스 및 냄새 등이 축적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냄새 및 가스 배제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시설은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대기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지점 및 경계구역 설정이 7개소 및 2km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인접한 영향지역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추가적인 지점 및 경계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침출수 발생 시 영향을 미칠 지하수 및 지표수질 조사 지점이 10개소로 제시하였음. 하지만 낙화암천 및 내성천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제시한 지점(W-3, W-4, W-5, GW-3)은 낙화암천 및 내성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지점으로 판단됨. 내성천과 낙화암천 합류 후 축적이 가능한 W-6지점으로는 축정에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지점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질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본 지류는 합류 후 영주댐 및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국민들이 음용하는 원수가 되므로 음용수 수질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61개 항목을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이 검토함. 2024. 12. 29. 심의위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봉화군 도촌리 폐기물매립시설] ☐ (안건 및 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총괄 의견 ○ 사업장 설치 후 다수의 차량의 본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나, 생활환경 측면에서 500m만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본 사업장 진입을 위해서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근지역은 농업 및 축산 지역으로 다수의 농기계 및 대형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보임. 이에 교통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④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장 설치에 따른 영향은 도촌리 일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봉화 및 인근 영주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현재 봉화읍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기피시설 도입 시 인구유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으로 주민갈등 해소 및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봉화군민 및 영주시민들에게도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설명회는 1회로는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 2회 이상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⑤ 기타 - 계획중인 사업장은 영주댐 상류에 위치하여 침출수 발생 시 오염수가 영주댐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영주댐은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상류에 오염원이 추가되는 것은 먹는 물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사업기간은 15년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15년 후 관리가 소홀해 질 것이며 가동중일때와 다르게 관리인력이 다수 이탈할 것입니다. 이는 충분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대기 및 수질, 생활환경 적으로 모니터링 및 향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에 향후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전자별로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검토함. 2024. 12. 29. 심의위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심의의원5	

[붙임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봉화군 도촌리 폐기물매립시설] ☐ (안전 및 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총괄 의견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됨.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①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자연생태환경분야 · 높은 경사도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필요 · 사업시행으로 인해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농선, 계곡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제시 - 대기분야 ·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의 기상현황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계절 변화에 따른 대기질 영향 분석 필요 - 수질분야 · 각종 수환경 관련지역(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하천 등)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하수, 지표수 등의 오염가능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 사업대상지 주변 마을(도촌리, 문단리, 적덕리 등)지하수 관정 등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모든 수자원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 현재 사업대상지 주변은 하수처리구역 외이므로 향후 매립시설 운영시 발생될 침출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기술필요 - 생활환경분야 · 향후 사업시행시 좁은 도로를 이용하여 폐기를 수집운반을 하여야 함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필요	② 환경보전방안 대안의 적정성 - 현재 평가준비서 상 대안의 종류는 크게 매립방식, 입지에 대한 비교·검토만 수록되어 있어 다른 환경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보전방안의 마련이 필요 ③ 평가항목·범위·방법 설정의 적정성 - 자연생태환경 분야 ·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법정보호종(매사부상 등 포함)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현재 평가대상지역을 10km이상으로 확대하여 조사 필요(※현재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니 만큼 보호수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평가대상지역을 5km 이상으로 설정하여 조사필요(※현재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 대기분야 · 대기영향 범위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로 설정하였는데,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 및 악취의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인접한 영주시청 및 봉화군청 소재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km로 확대하여 조사필요 · 현재 평가준비서상 7개 지점으로 되어 있는 대기질 측정설 20개 정도로 추가하여 면밀한 대기질 조사가 필요 - 수질분야 · 현재 평가준비서상 지표수질 6개, 지하수질 4개 지점으로 되어 있는 수질 조사를 50개 정도로 추가하여 사업대상지 주변 2km 이내 주민민가, 학교, 축산시설에 대해 조사 필요 · 사업대상지 주변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 이동경로 조사 및 먹는물 지하수 검사기준인 36항목에 대한 검사필요(※현재 지하수의 경우 26항목만 검사예정) - 폐기를 분야 · 전국 폐기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대상 폐기물의 봉화군 발생량 및 처리량, 전국 발생량 및 처리량의 자료수출 필요 - 생활환경 분야 · 사업대상지 주변 민가 및 다수의 밀집된 농가가 있으므로 평가대상지역을 10km로 확대하여 조사필요(※현재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 현재 평가준비서상 4개 지점으로 되어 있는 소음진동 측정을 50개 정도로 추가하여 주민민가, 학교, 축산시설 등 세분화하여 조사 필요 · 현재 평가준비서상 7개 지점으로 되어 있는 악취측정을 20개 정도로 추가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요 경관요소를 파악하고 시설 설치로 인한 경관변화를 조사 하여야 함. · 사업 운영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 예측을 위해 현재 사업지구 경계 2km로 되어 있는 조사구역을 10km로 확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며, 7개 조사 지점을 50개 지점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필요 ④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대상지 주변뿐 아니라 환경 영향권인 봉화군민, 영주시민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요구되므로 2회 이상 개최 필요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⑤ 기타 - 계획중인 사업장은 내성천과 인접해 있을 뿐더러 영주댐 상류에 위치하여 침출수 유출 시 오염수가 내성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예정지 주변에 다수의 민가가 존재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수인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존재함. 또한, 도촌리 폐기물매립시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따르면 총 매립용량은 260만㎡로 폐기를 운반을 위하여 대형트럭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상황은 인근지역(도촌리, 문단리, 적덕리 등)의 교통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폐기를 장거리 이동시 악취, 비산먼지, 운반차량 매연 등 환경오염이 재발생되므로 사업장 폐기를 발생량이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우리군보다는 폐기를 발생지로부터 최대한 근거리에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환경정책의 방향이라 판단됨. 따라서, 폐기를 비산, 침출수 유출우려 등 2차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시설 설치 후 사후적 규제보다는 사전적으로 환경이 오염될 경우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됨. 위와 같이 검토함. 2024. 12. 30. 심의위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심의의원6

[붙임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봉화군 도촌리 폐기물매립시설] □ (안건 및 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총괄 의견 ○ 본 건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①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적용 부문 : 도촌리뿐만 아니라 봉화를 전체를 대상으로 취약성, 위험성 등 평가(산사태 등 고려) ② 환경보전방안 대안의 적정성 - 의견 없음 ③ 평가항목·범위·방법 설정의 적정성 - 의견 없음 ④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⑤ 기타 - "기후변화영향평가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2023년 3월,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시·도·군·구·자치단체)(2023년 7월, 환경부) 등 참고 - LFG 발전 적격 검토 위와 같이 검토함. 2024. 1. 6. 심의위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붙임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봉화군 도촌리 폐기물매립시설] □ (안건 및 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총괄 의견 ○ 본 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도촌리 산73-14번지 일원에 면적 248,947㎡, 용량 2,600,000㎥ 규모의 폐기물매립시설을 신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①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매립대상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기질 및 악취,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평가대상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환경보전방안 대안의 적정성 - 폐기물 운반 경로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소음, 악취,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함 ③ 평가항목·범위·방법 설정의 적정성 - 의견없음 ④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매립시설은 주민 기피시설이므로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운영 시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함 ⑤ 기타 - 환경영향평가 작성 시에는 급회 매립시설 계획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산출 방법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이 검토함. 2025. 01. 06. 심의위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심의의원7	심의의원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봉화군 도촌리 폐기물매립시설] □ (안건 및 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총괄의견 봉화군은 청량산, 문수산 등 백두대간과 소백산맥, 양백지간의 천하명당 조선삼승지로서 수려한 산과 기암진 돌판물 가진 관광과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청정지역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봉화군의 행정중심지인 봉화읍은 봉화군을 대표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대표지역으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봉화읍 도촌리에 조성할려는 폐기물매립장 환경영향평가준비서에는 폐기물최저처리시설(매립)조성사업으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의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실이지만, 이는 곧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 전반을 매립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봉화군에서만 발생하는 폐기물이 아닌 봉화군 등이라 하면 전국의 지정, 산업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할 계획인 사업으로 봉화읍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적, 사회문화적, 보건환경적 악영향이 막대하므로 폐기물 매립장 시설의 허용 여부는 제반 법령에 명시한 환경적·기술적 요소 이외에 위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제이득권, 건강권과 환경권 등 주민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이 사업으로 인해 사업자가 얻게 될 이익보다 긴급하고 막중하므로 이 사업계획의 환경영향평가는 더욱 세심하고 깊이 있게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첨부 위와 같이 검토함. 2024. 1. 6. 심의위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설정의 적정성 우선 매립장 위치가 도촌리 산73-1번지 일원으로 지형상 고지대로 계획해 저지대·저습지·협곡·공유수면매립지에 시설하도록 규정한 '도·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또 높은 경사도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된다. 2.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정성 1) 지역경제적 환경요인 봉화읍은 친환경 발원 '청량쌀'의 주산지이며 친환경농업 중심의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산업폐기물 매립장 존재 자체가 살농사와 각종 친환경농업의 영농에 악영향을 끼쳐 청정 농산물 산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농가소득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 사회문화적 환경요인 봉화읍은 유교적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장으로, 내성천 등 맑고 깨끗한 천수공간을 품고 있어 우수축제로 선정된 은어축제와 송이축제에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청정관광지이다. 역사문화관광지, 자연힐링 관광지인 봉화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된다면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받게 돼 청정 봉화의 강점과 문화 정체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악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제시 3) 보건환경적 요인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영농환경은 물론 주민의 보건환경과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먼저 이를 최소화할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매립대상이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산업폐기물 전체'를 의미하며 매립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은 인체에 해로운 납, 수은 등 중금속 물질과 황산화물을 수질과 대기에 배출해 위험성이 높다. 특히 계획 매립 용량은 260만㎥로 15톤 덤프트럭 17만대 분량으로 막대하고, 매립 기간도 16년으로 장기간이어서 환경 위험성을 가중시킨다. 3. 평가항목, 범위, 방법 설정의 적정성 1) 수질분야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심의의원9	

폐기를 침출수 최소화를 위해 매립장 내에 우수 배제시설, 지하수 배제시설, 차수시설, 집·배수시설 등을 설치한다고 돼 있으나, 사업장 외 농업지역과 내성천으로 이어지는 우수하천까지 노면 또는 지하 유입에 대한 차단 및 저감 대책이 없다. 특히 단순히 1차 침출수 처리만 하고 위탁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위문이며 그 곳에서 반입 금지 시 연 사업장 인근에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어 위험한 부분이 있다. 2) 대기분야 본 사업계획은 매립가스를 모으는 포집정과 포집관로 설치 계획만 있을 뿐 포집된 유해 가스를 어떻게 청정 공기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가스처리시설(LFG재활용시설 보일러용량 0.6ton/hr)계획이 있으나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고장이나 가동불능시 대기유출이 우려된다. 3) 소음, 진동 매립장 40미터 지하부 토공사 발생할 심각한 발파 소음과 진동 대책의 부재와 환경위협시설의 진입로를 위한 농지전용 문제와 주민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음 4) 생활환경 본 사업장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발생시킬 오염시설이므로 수질오염, 대기오염, 주민 보건위험 등에 대한 평가 대상지역도 영주시, 봉화군이 포함되도록 사업지 반경 5km까지 확대해야 하며, 7개 조사지점도 10개이상 세분화하여 조사 필요함. 악취취정도 7개 지점을 20개정도로 추가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 5) 자연생태환경 법정보호종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사범위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3km이내에서 2km까지 확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며, 또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나 만골 보호수목에 대한 조사도 평가대상지역을 2km까지 설정하여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음 4.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1) 사업대상지 주변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권인 봉화군민,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지역별로 최소한 2회이상 개최필요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주민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	---

심의의원9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명	봉화읍 도촌리 폐기를 귀종차분시설(매립) 조성사업
위 치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73-14번지 일원
심 의 의 건 서	
□ 총 발 의 건	
○ 본 사업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73-14번지 일원에 폐기물 매립시설(248,947㎡)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아래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대기질·악취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경관리계획, 오염물질 처리 대책 및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급회 사업의 평가대상지역(사업지역 및 영향지역)을 봉화군 및 영주시로 설정(준비서 24쪽)하였으나, 지역개황,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 항목 및 범위설정 시 영주시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은 누락되었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65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3.4.)」,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4.1.)」,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22.9.)」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환경 영향 및 지역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중 영향 범위가 가장 큰 항목의 평가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4.1.)」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영향범위 예측에 사용된 분석기법, 모델종류, 사용자료 등을 제시하고, 그 선정 사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1 -

- 안내서에 제시된 타 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한 대기질·악취·건강영향범위로 확대(2km → 5km)하는 방안 검토	
- 소음·진동 영향범위(500m)를 「봉화도촌양계단지」 및 주변 민감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2. 토지이용계획안	
○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지구 인근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4.1.)」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에는 생태면적률, 녹지율 등 환경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명기하여야 함.	
3. 지역 개황	
○ 사업부지 인근에 「도촌초등학교」, 「봉화도촌양계단지」, 축사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이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누락하였으므로,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을 면밀히 제조사하고 평가항목 및 영향범위 예측에 반영하여야 함.	
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3.4.)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생태면적률(당시목표 50 이상), 건강영향평가 등 법률(행정규칙 포함)에서 설정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별로 정량적으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5. 대안의 설정	
○ 급회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계획비교」, 「수단방법」, 「시기·순서」를 선정하였으나,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 비교·평가 등이 누락되었음.	
○ 입지에 대한 비교·검토 시 급회 사업지구와 「봉화일반산업단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나, 규모, 경제조정, 토지이용계획, 일반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 동일면적 대비 산업훼손비율 등 사회·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함.	

- 2 -

심의의원10

심의의원10

- 급회 사업은 전라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므로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 제시 6.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하는 행렬식대조표를 통하여 환경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여야 하나, 급회 준비서에는 행렬식대조표가 누락되어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선정이 어려움. ○ 사업부지 북서측에 악취유발시설(분쇄도출양제단지)이 위치하는 바, 사업 시행 전·후 환경영향을 비교·연계할 수 있도록 대기질·악취·공중보건 현황조사 지점으로 추가 선정하여야 함. ○ 급회 환경질 조사지점은 발생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나, 평가범위가 확대된 경우 환경민감시설 및 피해유발시설 유무, 지역적 환경특성, 집단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황조사 지점을 추가 선정하여야 함. 7.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급회 계획은 해당 지자체에 기피시설(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 ○ 주민 의견수렴 시 주민 등에게 평가서 초안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평가요약서"를 작성, 활용하여야 함. ○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주민공람, 현수막 게시, 설명회·공청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 시 다양한 해결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평가대상지역(분화군, 영주시)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분화군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공람하고 초안 공람기간 내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지붕형)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일시, 방법, 인질 접촉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7. 기타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등 심의의견의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반영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각종 도면, 사진 등은 육안판독이 용이하도록 색채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범례를 명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환경부, '12.10)」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물 검토서"를 작성·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제1항제5호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자의 제대행 승인 등) 및 "환경영향평가등 제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40호, 2022.12.1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업무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3.4) 제42조(보존대상 기초자료의 범위 및 기준) [별표 11]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환경현황분야(대기질, 수질 등 현황자료 또는 측정자료, 생태계분야(동·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관련자료 일체를 평가서등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함(기록지, 영수증, 차량 운행일지 등). 2025. 1. (분화읍 도촌리 폐기물처리중치분시설(매립)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	---

심의의원10